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6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순환경제기본계획 수립주기 단축 〉

■ 강득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1972호)

2025. 11.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순환경제기본계획 수립주기 단축	2
※ 참고자료: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2018~2027) 주요 내용	9

I. 제안경위

2025년 8월 5일 강득구의원이 대표발의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8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중장기 정책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순환경제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10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5년이 지나면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시기를 거치면서 플라스틱 사용량이 크게 증가하였고, 탈플라스틱으로 나아가기 위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 대응 등을 위하여 국내의 폐기물 감축을 위한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한 실정임. 뿐만 아니라, 건설폐기물, 전자제품 폐기물의 자원 재 활용을 비롯하여, 폐의류 및 동물의 배설물 처리에 이르기까지 자원순환의 중요성이 날로 커짐에 따라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순환경제기본계획의 수립주기를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변경함으로써 폐기물정책 관련 상황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Ⅲ. 검토의견

1. 순환경제기본계획 수립주기 단축

개정안은 현행 10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순환경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의 수립주기를 5년으로 단축하면서, 기본계획 수립 5년 경과 시 추진하여야 하는 타당성 검토 의무 규정 및 그 검토 결과를 기본계획에 재량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10조).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순환경제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중장기 정책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순환경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u>10년</u> 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10조(순환경제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 ----- ----- ----- ---5년----- <u>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u>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u>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5년이 지나면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u>	<삭제>
④ <u>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여건 변화</u>	<삭제>

현행	개정안
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생략)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 또는 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 -----<u>제1항 후단</u>----- ----- ----- ----- ----- --. ⑥ (현행과 같음) ⑦ -----<u>기본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u>----- ----- ----- -----.

현행법은 기존에 폐기물의 발생 억제·순환이용·처분에 초점을 두고 있던 「자원순환기본법」을 전부개정하여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생산·소비·유통 등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순환이용 촉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음.

한편, 현행법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10년 주기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¹⁾하

고 있는데²⁾,

현재 전부개정 당시 부칙³⁾에 따라 2018년 수립된 제1차 자원순환기본 계획(2018~2027년)이 기본계획을 갈음하고 있는 상황이나, 수립 주기가 도래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음.

-
- 1)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0조(순환경제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중장기 정책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순환경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기본방침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의 발생 억제에 관한 사항
 3. 순환이용의 활성화와 폐기물의 적정 처분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및 국민 등 이해관계자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5. 기본계획의 시행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의 확보계획
 6.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5년이 지나면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여건 변화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에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 또는 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2) 한편,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시행계획의 수립주기는 5년,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는 집행계획의 수립주기는 1년임.
- 3) 법률 제19208호 부칙 제2조(순환경제기본계획·시행계획·집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립한 자원순환기본계획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립한 순환경제기본계획으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연차별 시행계획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으로 본다.
-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수립한 시행계획은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행계획으로 본다.
-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 연차별 집행계획은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차별 집행계획으로 본다.

[제1차 순환경제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사업명	주요내용	예산(백만원)	
		'25년	'26년
순환경제 기본계획 수립 및 연구용역	- 제1차 순환경제기본계획('27~'36) 마련	200	105
지자체 시행계획 및 집행계획 수립 지원용역	- 지자체 설명회·포럼·의견수렴·계획수립 컨설팅 지원	-	95

개정안은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함으로써 다양한 폐기물의 자원 순환을 위한 시의적절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한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실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음.

다만, 동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현행법이 순환경제 전환을 위한 기본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기본계획의 목적이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5년의 수립주기가 이러한 성격에 부합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중장기 방향을 수립하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⁴⁾의 경우 수립주기가 20년이며,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⁵⁾,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환경개선 중

4)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국가환경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 차원의 환경보전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국가환경종합계획”이라 한다)을 2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5) 「자연환경보전법」 제8조(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국의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합계획⁶⁾, 「물관리기본법」에 따른 국가 물관리기본계획⁷⁾ 등은 수립 주기를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후·환경정책이 장기간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또한, 기본계획에 따라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시행계획의 주기가 5년이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는 집행계획의 주기가 1년임을 고려할 때, 상위계획인 기본계획의 수립주기를 구체적인 과제 추진계획인 시행계획과 동일한 5년으로 규정하는 것은 계획체계의 위계상 다소 어색한 측면이 있음.

둘째, 기본계획 수립 비용 등을 고려할 때 타당성 검토를 통해 도출된 개선사항을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관련 연구용역 및 예산]

사업명	주요내용	예산(백만원)
자원순환 기본계획 수립 연구 (‘15~’16)	- 현황 및 여건 분석 - 순환경제 추진방향 및 목표설정 -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 - 이해관계자 역할분담 및 재정계획 등	300
제1차 순환자원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연구 ⁸⁾ (‘22~’23)	-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 평가 및 분석 - 국내외 여건 변화 조사 및 분석 - 제1차 자원순환 기본계획 개선방안 제시	73

6)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줄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7) 「물관리기본법」 제27조(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10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하 “국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차 순환경제 기본계획 수립연구 ('25~'26)	- 제1차 자원순환 기본계획 추진실적 분석·평가 - 순환경제 제도의 성과 분석 및 개선방향 제시 - 제1차 순환경제기본계획 마련 - 순환경제 기본계획 마련 정책협의회 구성·운영 등	305
------------------------------	---	-----

따라서, 기본계획의 수립주기는 현행과 같이 10년으로 유지하면서 5년마다 실시하는 타당성 검토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빠른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⁹⁾.

이에 더하여, 개정안 부칙에서는 제10조에 따른 기본계획, 제11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대해서만 경과조치를 두고 있는데, 제11조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는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도 규정하고 있으므로¹⁰⁾ 집행계획에 대해서도 경과조치를 둘 필요가 있음.

8) [타당성 검토에 따른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 개선방향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순환경제 정책 추진방향		- 자원의 선순환 촉진과 함께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 저감 측면까지 포함한 순환경제 정책 수립 필요
단계별 세부과제 개선방향	생산단계	- 자원순환성을 고려한 원료 사용 촉진을 위해 저탄소 자원순환형 혁신소재 개발 및 상용화 필요 -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를 유도하기 위한 체계 구축 필요
	소비단계	- (민간) 지속가능한 소비생활 확대 유도 필요 - (공공) 자원순환형 제품 공공조달·구매 활성화 필요
	관리단계	- 재제조 확대 및 재활용 산업 활성화, 금속재자원화(도시광산) 및 도시유전 활성화, 제조공정 폐에너지·부산물 순환이용 촉진, 미래폐자원 회수 재활용 체계 구축 및 폐자원 에너지 회수 촉진 필요
	재생단계	- 재생원료 시장 확대를 통해 자원의 선순환을 촉진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필요
순환경제 저변 확대 및 이행 확산		- 세제지원, 배출권거래제 개선, 환경표지 등 에코라벨링, 소비자의 자우너순환형 제품 선택 권리 강화 등

9) 유사 입법례로, 「물관리기본법」에 따른 국가 물관리기본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도법」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은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국가계획을 변경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10)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1조(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투자계획을 포함한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5년마다 관할지역에 대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투자계획을 포함한 기본계획의

기후에너지환경부도 순환경제 관련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한 계획을 수립·추진하기 위한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여, 기본계획은 10년 주기로 수립하되 타당성 검토 결과를 의무적으로 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임¹¹⁾.

문 의 처
02)6788-5536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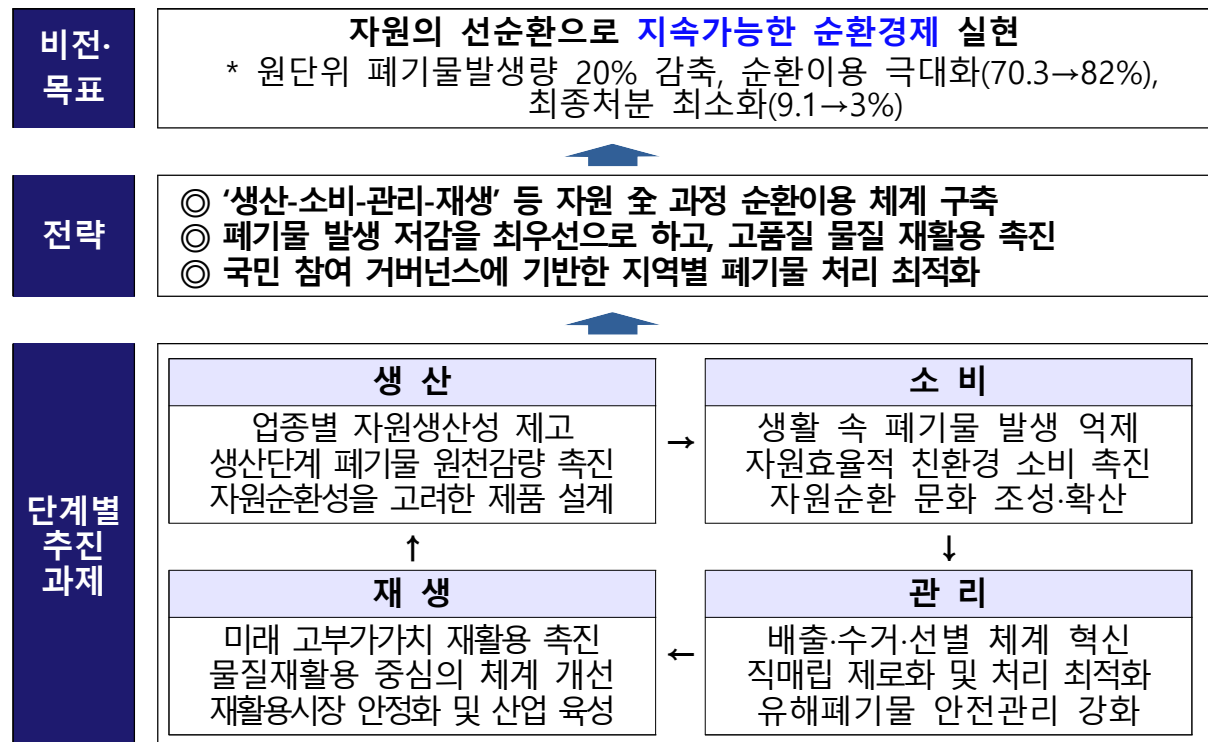
11)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2~2023년에 실시한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내용을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라 밝히고 있음.

※ 참고자료: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2018~2027) 주요 내용

I. 수립배경 및 필요성

- 경제성장과 인구증가로 인한 물질소비의 증가는 자원의 고갈과 함께 환경적·경제적 지속가능성의 문제를 야기
 - 전 세계적으로 '채취-생산-소비-폐기'로 이루어지는 선형 경제구조를 순환형으로 전환하는 '순환경제'(circular economy) 정책 추진 중
 - * 한정된 천연자원을 적게 사용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고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폐기물을 최대한 생산과정에 재투입하여 경제에 환류
 - 국내 정책은 폐기물 처분 중심에서 재활용 촉진으로 발전해 왔으나, 여전히 폐기물 발생 이후 사후관리 위주의 정책으로 인해 폐기물 발생 지속 증가*
 - * 국내 총 폐기물 발생량은 '16년 약 1.56억 톤으로 '06년 대비 30% 증가
- ⇒ 우리 경제·사회구조를 생산부터 재활용까지 자원순환형으로 근본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국가 전략을 담은 자원순환기본계획('18~'27) 수립 추진

II. 비전 및 전략



III. 단계별 세부 추진계획

<1. 생산단계> 자원효율적 생산구조 확립

◆ **업종별로 자원생산성 제고**(투입자원·공정손실 저감), **자원순환성 개선**(폐기물 감량·순환이용 촉진)을 연계하여 **자원효율적인 생산구조 확립**

- ① **업종별 자원생산성 제고** * 자원생산성: 물질소비량 대비 창출한 경제적 가치의 비율
- (자원생산성 향상) 주요 자원별(금속류 → 유기화합물), 업종별 물질흐름 분석을 토대로 제조업 등 18개 업종별 자원생산성 산정 및 중장기 관리목표 수립('19~)
 - 목표 이행을 위해 생산 전 과정 진단을 통해 자원·에너지 손실을 저감하는 자원효율관리시스템(REMS) 보급·확산 등 산업계 지원체계 도입('19~)

② **생산단계 폐기물 원천감량 촉진**

- (사업장 성과관리) 18개 업종 중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약 3,500개소)에 대한 사업장별 맞춤형 자원순환 목표(감량·순환이용 등) 설정·관리('19~)
- (기술 개발·확산) 폐기물 감량 R&D를 추진하여 우수기술은 신규 배출시설 설치 시 반영, 업종별·기술유형별 가이드라인 마련('19~)

③ **자원순환성을 고려한 제품 설계**

- (자원순환형 생산 확산) 재활용 용이성·내구성·수리 가능성을 고려한 제품 설계기준 및 산업계 인센티브* 제도 마련
- * 포장재: EPR 분담금 차등화, 전기전자제품: 우수제품 인센티브 지원 등
- 재활용 현장 조사를 통해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은 순환이용성 평가개선권고
- * '27년까지 포장용기, 전기전자제품 등 주요 제품 중 80%에 대한 순환이용성 개선 완료

<2. 소비단계> 친환경 소비로 폐기물 발생 최소화

◆ **대체가능한 1회용품 사용은 제로화**하고 **재사용 등 친환경 소비를 촉진**하여 **폐기물 발생 최소화**

① **생활 속 폐기물 발생 억제**

- (1회용품 사용억제) 대체가능 제품이 있는 1회용품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다회용품으로 대체 추진(1회용컵, 플라스틱 빨대 등)
- (불필요한 과대포장 최소화) 친환경 포장재질로의 대체, 택배 등 과대포장 억제, 마트 등의 이중포장 제한 등 관리 강화('19~)

- (음식물쓰레기 감량) 감량 효과(35% 수준)가 큰 **RFID 종량제** 방식 지속 확대
 - *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 의무화(~'22) → 단독주택·소형음식점 등 확대 적용(~'27)

② 자원 효율적인 친환경 소비 촉진

- (친환경 소비 확산) 재활용제품 공공구매 활성화(공공기관 녹색구매비율 49% → 70%), 녹색매장 확대(520개소 → 800개소), 재사용 네트워크 구축 등 친환경 소비 확산
- (자원효율성 정보 제공) 제품별 자원 소모량(자원발자국), 재활용 용이성 등 자원효율성 정보 제공 확대로 소비행태 변화 유도

③ 자원순환 문화 조성 및 확산

- (전 국민 참여 유도) 국민 실천협의회 및 전국 자원순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범국민 실천 캠페인 추진, 이행상황 모니터링('18~)

<3. 관리단계> 지역 거버넌스를 통한 처리 최적화

◆ 배출·수거·선별 체계 혁신 및 폐기물 직매립 최소화로 버려지는 자원을 줄이고, 지역 거버넌스를 통한 지역별 처리 최적화

① 배출·수거·선별 체계 혁신

- (분리배출 개선) 공동주택·단독주택·농어촌 등 지자체 별 여건에 따라 현지주민 참여에 기반한 최적 분리배출 모델 마련·확산('19~)
- (수거·선별 효율 개선) 지자체 공공관리 강화로 수거 안정성을 제고, 폐기물 자동선별 시스템 현대화 등으로 버려지는 잔재물 발생 최소화

② 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및 처리 최적화

- (직매립 제로화) 매립·소각되는 폐기물에 처분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매립되는 양을 줄이고, 단계적으로 직매립 금지 확대* 추진(~'27)
 - * 폐기물 매립 이전 중간처리 의무화(음식물류 폐기물은 '05년부터 직매립 금지)
- (지역별 처리 최적화) 지역주민·시민단체·전문가 등이 포함된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공공·민간 처리시설을 연계한 폐기물 최적 처리방안 마련
- (처리시설 정비) 기존 매립지 정비 및 노후 소각시설 현대화 등 효율 개선으로 기존 시설 수명을 최대한 연장하여 신규 시설 설치수요 억제
 - * 폐기물 처리시설 사용기간 연장, 유지비용 절감 등을 위한 자산관리 시스템 도입('20~)

③ 유해폐기물 안전관리 강화

- (IT 기반 쏘 과정 관리) 폐기물 처리상황을 실시간 추적·관리하여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하도록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GPS 부착 확대***
 - * 지정폐기물('18) → 음식물류 폐기물('19~) → 전체 폐기물 수집·운반차량(~'27)

- (유해폐기물 안전처리) 폐농약 등 생활 속 유해폐기물, 수은폐기물, 의료폐기물 등에 대한 별도 처리체계 구축, 발생 저감 등 안전관리 강화
 - * (수은) 열적 처리·수은 회수 등 관리체계 구축으로 처리대상 수은 70% 이상 회수(∼'27) (의료) 자가 멸균시설 확대, 분리배출 개선 등으로 발생량 저감('20년까지 20% 감축)

〈4. 재생단계〉 고부가가치 물질 재활용 촉진

◆ **자원화 가치가 높은 미래 폐기물에 대한 선제적 재활용기반 구축, 재활용 R&D 및 재생원료 사용 확대 등 물질재활용 촉진**

① 미래 고부가가치 재활용 촉진

- (미래 폐자원 재활용 기반) 민간 재활용 시장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전기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모듈 등 미래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 기반 구축
 - * 거점수거센터 및 재활용센터 설치·운영(공공) → 재활용시장 활성화 후 민간 이양
- (재활용제품 품질 제고) 재활용제품 품질 제고를 위해 폐기물 발생부터 자원화까지 전 과정에 대한 중장기 R&D 추진('21∼'27), 재생원료 별 품질기준 마련

② 물질 재활용 중심의 재활용체계 개선

- (재생원료 사용 촉진) 건설폐기물로 만든 순환골재 의무사용 비율 확대*, 플라스틱(폐비닐 등)·자동차·전자제품 등의 재활용율 제고**
 - * 현재 용도구분 없이 40% 이상 → 용도별 안전성을 고려하여 50% 이상까지 확대
 - ** 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품목의 점진적 확대 등 재활용에 대한 생산자 책임 강화
- (폐자원에너지 효율화) 각각 처리되던 음식물류 폐기물·하수슬러지·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의 병합처리 확대로 바이오가스화 효율 개선

③ 재활용 시장 안정화 및 산업 육성

- (재활용시장 안정화) 재활용시장 전담 관리기구를 설치하여 폐기물 적체 우려 시 비축사업, 긴급융자 등 상황에 맞는 시장 안정화 조치 실시
- (영세 재활용산업 육성) 영세 재활용 사업자에 대한 시설 설치 자금 등 융자 확대, 유관 기관 합동으로 재활용 제품의 해외 개척 지원

참고

관련 해외 동향

- **(OECD)** 자원의 전 생애에 걸친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책제언을 담은 **지속가능한 물질관리(Sustainable Materials Management)** 제시⁽¹²⁾
 - 천연자원의 보호, 전 생애주기 관점에서 지속가능성과 안전성을 고려한 공정·제품 설계 및 관리 등을 정책적 원칙으로 제시
- **(UN)** '30년까지 달성해야 할 인류 공동의 목표로 **UN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채택^(15.9)
 - **(SDGs 12)**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체계 구축'을 통한 천연자원의 효율적 사용,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촉진 등을 포함
- **(EU)** 순환경제 패키지(Circular Economy Package) 발표^(15.12)
 - 제품의 생산, 소비, 폐기물 관리, 재생원료 사용 촉진 등 4단계로 구성된 순환경제 구현을 위한 행동계획(action plan)과 4개의 폐기물 규정 개정안(revised legislative proposals on waste)으로 구성

구 분	주요 내용
제품 생산단계	- 제품의 디자인 단계부터 수리용이성, 내구성, 재활용가능성 등을 높이기 위한 에코디자인 개선(전기전자제품 등) - 산업시설 설치허가 시 자원사용의 효율성과 폐기물 발생 저감에 대한 내용을 산업공정별 최적가용기술 지침(BREF)에 반영
제품 소비단계	- 제품의 내구성 증대를 위하여 에코디자인 지침 개정 시 제품별 교체부품, 수리정보 제공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명시 - 공공기관의 물품조달에서 제품의 내구성과 수리 가능성을 중시하는 녹색조달(Green Public Procurement) 확대
발생된 폐기물 관리	- 2030년까지 도시폐기물 재활용 65%, 포장폐기물 재활용 75%, 모든 폐기물의 매립률 최대 10% 수준 감축 - 재활용 통계 개선, 매립세 등과 같은 경제적 수단 도입 유도, 회원국 내 매립·소각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과잉설치 방지
재생원료 사용촉진	- 이차자원(secondary raw materials) 사용촉진을 위해 EU 공통의 품질기준 마련 추진 - 음식물폐기물, 하수슬러지, 퇴비를 활용한 유기성비료의 사용 증대를 위하여 EU 차원의 규정정비 추진